

서울특별시 마포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| |
|----------|-------|
| 의안 번호 | 11-42 |
|----------|-------|

제출년월일 : 2011. 6.

발의자 : 정형기 의원 외 2인

1. 개정이유

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 행정 및 주민자치 조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통장의 임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업무활동을 보장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통장의 임기중 신규위촉 대상자가 없을 경우 연임할 수 있도록 함.

(안 제4조제1항)

나. 임기중 통장의 연령이 65세에 도달한 경우 그 달의 말까지를 임기로 함.(안 제4조제2항)

다. 통장이 임기중 해촉되어 공석이 된 경우에는 신규 위촉된 통장의 임기는 제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. (안 제4조제3항)

3. 개정근거

「지방자치법」 제4조 제6항

4. 개정조례안 : 따로 붙임

5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6. 기타사항

가. 입법예고 : 해당 없음

나. 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 의견 : 사전 협의완료

다.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

서울특별시 마포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통·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신규위촉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.
- ② 임기 중 통장의 연령이 65세에 도달하는 때에는 그 달의 말일까지 재임한다.
- ③ 통장이 임기 중 해촉되어 공석이 된 경우 신규 위촉된 통장의 임기는 제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.

부 칙

- ①(시행일)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조제2항의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
- ②(경과규정)이 조례 시행당시 재임 중인 통장도 개정된 제4조를 적용한다.
다만 이 조례 공포일로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해당 통장의 연령이 위촉자격 상한연령을 초과하면 당연 해촉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|
| <p>제4조(통장의 임기)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</p> <p>다만, 임기중 해당 통장의 연령이 위촉자격 상한연령을 초과하면 당연 해촉된다.</p> <p><신 설></p> <p><신 설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①(시행일)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</p> <p><신 설></p> | <p>제4조(통장의임기) ①-----</p> <p>-----</p> <p>다만, 신규위촉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.</p> <p>②임기 중에 통장의 연령이 65세에 도달하는 때에는 그 달의 말일까지 재임한다</p> <p>③통장의 임기 중 해촉되어 공석이 된 경우 신규위촉된 통장의 임기는 제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① (시행일)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조제2항의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</p> <p>②(경과규정)이 조례 시행당시 재임 중인 통장도 개정된 제4조를 적용한다.</p> <p>다만, 이 조례 공포일로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해당 통장의 연령이 위촉자격 상한연령을 초과하면 당연 해촉된다.</p> |